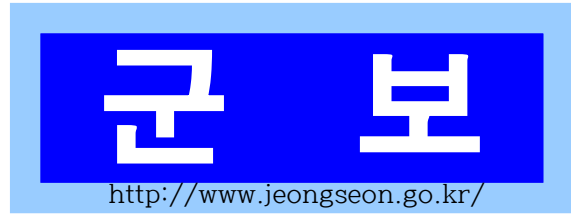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71호 2012. 6. 20. (수)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19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46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79
- 정선군 공고 제2012-47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2
- 정선군 공고 제2012-476호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입법예고..... 87
- 정선군 공고 제2012-477호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3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06. 20.

정선군 규칙 제119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를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5조의”를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3항의”를 “제27조제2항의”으로 하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의사발표의”를 “의사표현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의”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으로 하고,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에”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

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의2 제목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을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특별임용의 인원제한)”을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전직시험의 면제)”를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3호의”를 “제10조제3호의”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의2제2항 중 “제20조의”를 “제23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쟁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직렬 /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 개발	<u>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u>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u>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u>
	수산경제	<u>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u>
보건연구	의 학	<u>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u>
	약 학	<u>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u>
	공중보건	<u>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u>
환경연구	환 경	<u>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u>
시설연구	토 목	<u>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u>
	건 축	<u>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u>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u>농촌생 화직류 제외</u>)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 대학이상 졸업자
	<u>농촌생활</u>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 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 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
설 2006. 2. 15>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 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u>대한민국명장</u> , 기술사, 기능 장, 기사(6년), 기능명장(6년)	기사(2년), 산 업기사(4년), <u>기능명장(2년)</u>	기사, 산업기사 (2년), 기능사 (4년), <u>기능명 장, 국제기능올 림픽 입상자(2년)</u>	산업기사, 기능 사(2년), <u>국제 기능올림픽 입 상자, 전국기능 대회 입상자(2년)</u>	기능사, <u>전국기 능대회 입상자</u>	기능사, <u>지방기 능경기 입상자</u>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
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
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
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u>직 렬</u>	<u>직 류</u>	<u>대 상 자 격 증</u>
<u>행 정</u>	<u>운 수</u>	산업기사 : <u>철도운송</u>
<u>전 산</u>	<u>전 산</u>	기 술 사 : <u>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u> 기 사 : <u>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u> 산업기사 : <u>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u>
<u>공 업</u>	<u>일반기계</u>	기 술 사 : <u>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u> 기 능 장 : <u>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u> 기 사 : <u>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u>
	<u>기계운전</u>	기 술 사 : <u>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u> 기 능 장 : <u>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u> 기 사 : <u>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u>
	<u>조 선</u>	기 술 사 : <u>조선</u> 기 사 : <u>일반기계, 조선</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 조선</u>
	<u>일반전기</u>	기 술 사 : <u>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u> 기 능 장 : <u>전기</u> 기 사 : <u>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u> 산업기사 : <u>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u>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잡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임업종묘,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u>해양, 어로, 수질관리</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u>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u>
	일반선박	기 술 사 : <u>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u> 기 사 : <u>일반기계, 조선</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 조선</u>
	선박항해	기 술 사 : <u>조선</u> 기 사 : <u>조선, 항로표지</u> 산업기사 : <u>조선, 항로표지</u>
	선박기관	기 술 사 : <u>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u> 기 사 : <u>일반기계</u> 산업기사 : <u>컴퓨터응용가공</u>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u>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 능 장 : <u>전기, 전자기기</u> 기 사 : <u>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u> 산업기사 : <u>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u>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u> 기 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u> 산업기사 : <u>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u>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u>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u>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기 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 산업기사 : <u>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u>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u> 산업기사 : <u>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u>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시 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
	전송기술	산업기사 :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 정 평 가 사 (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 (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렬	직류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u>선박항해</u>	<u>선박항해</u>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u>조 리</u>	<u>조 리</u>		<u>조리사 1급(4)</u>	<u>조리사 1급(2)</u>	<u>조리사 1급</u> <u>조리사 2급(2)</u>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도,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 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 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 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기계설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 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 (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물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 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 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 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 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 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 (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 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 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 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 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 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 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 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 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 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행정	행정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3급 정사서
공업	일반기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계운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직렬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공 업	직류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물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직렬\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계급 직렬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 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조정,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정,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당	전화 상당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렬	직류		
기계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사역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조리	조리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 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 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 업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간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	자 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잡 업	기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수 산 물 검 사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해양수산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 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 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 취급 감독자, 응급구조 사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 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 생사, 영양사, 응급 구조사2급, 보건 교육사2급 기능직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 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조 사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임 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 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 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기사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 (수질)
	대 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기사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 (대기)
	폐 기 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 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u>방송통신</u>	통 신 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	
	전자	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학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농업연구	<u>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u> <u>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u> <u>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u>	<u>산업기사 자격증</u> <u>가산 비율 적용</u> <u>: 영양사, 위생사</u>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잡업곤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잡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 공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촌지도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 경	기능장 : 산림	
농촌지도	임 업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능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u>의공</u>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u>의공</u>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환경연구	환 경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u>연구관</u>	3급· 지도관 <u>연구관</u>	4급· 지도관 <u>연구관</u>	5급· 지도관 <u>연구관</u>	6급· 기능직 6급 이상· 지도사 <u>연구사</u>	7급· 기능직 7급 이상· 지도사 <u>연구사</u>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장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위 원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u>3년</u>	<u>3년</u>

- 비 고 : 1. 위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4조제5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 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 촌 지 도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	급	2급	3급	4급
연	구	경	력	
		10년	8년	4년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u>계</u>	<u>급</u>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 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u>연구경력</u>		<u>8년</u>	<u>4년</u>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환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식 물 검 역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경 영	일반농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업	잠 업
		농촌지도	잠업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 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녹지	전	직	류	
			녹지연구	임	업		
				조경			
	잠	업	농	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농업	축	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	직	류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 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 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 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 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 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 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 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 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 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 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 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 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 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 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 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 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 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 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 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 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직렬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 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수 산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u>보건진료</u>		<u>간호사, 조산사</u>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 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u>방송통신</u>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u>방 송 통 신</u>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성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u>농 촌 지 도</u>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u>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u>)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u>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u>)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u>위생사, 영양사</u> ,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u>어 촌 지 도</u>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 신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 선	박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	림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11.12.8>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인)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임 용 예 정 직 명 : (급 류)				위 요구서에 첨부하 는 것과 동일한 원 판, 동일한 규격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1203-1-1A
1978. 10. 13승인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 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에는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1.~3. (생략) <u>4. 의사</u> 5. (생략) ②(생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u>임용예 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 일 20일전에, 10인이하인 때에는 시험 기일 10일전에</u>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 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 ----- <u>응시원서</u> <u>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u> ----- ----- ----- -----.
제6조의2(응시수수료) <u>영 제6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 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 부하지 아니하고, 시</u> <u>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u> 1.~3. (생략) <u><신 설></u>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u>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 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 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 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 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1.~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 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 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 기 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u>

현행	개정안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생략)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삭제<2008.09.30>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조,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u>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 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제14조 ----- 제6항 및 제15조의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70 -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서류전형의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의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제13조의2(서류전형의 기준) ①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 ----- ----- ----- -----.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 ----- -----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 ----- ----- ----- -----1퍼센트----- ----- -----.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 ----- ----- -----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 ----- -----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u>특별임용</u>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특별임용</u>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u>졸업한 자</u>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u><단서 신설></u> 3.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u>특별임용</u>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생략)	⑤ ----- ----- ----- ----- <u>경력경쟁임용</u> ----- ----- -----. 1. <u>경력경쟁임용</u> ----- <u>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u>----- -----. 2. ----- -----. <u>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u>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 ----- ----- <u>경력경쟁임용</u> -----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u>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u> <u>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장과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u>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생략)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으로 본다.</u> 제15조의2(<u>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특별임용</u>) ① (생략) 1.~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u>특별임용</u>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u>특별임용의 인원제한</u>)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u>특별임용</u>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⑨ ----- <u>경력</u> <u>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u> <u>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u>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u> 제15조의2(<u>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u>)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 <u>경력경쟁임용</u> ----- ----- 제16조(<u>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u>)----- ----- - <u>경력경쟁임용</u> ----- ----- -----

현행	개정안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신 설>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 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현행	개정안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생략)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생략) ④ (생략) 1.~3. (생략)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3조의 ----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중 제1항제4호 “의사” 삭제(제3조)
-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일 변경(제5조)
 -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는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
-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및 저소득층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제6조의2제2항, 제6조의2제3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함.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응시결격사유 기준일 규정(7조제2항)
 -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하고,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함.
- 연구직·지도직 특별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 소지 요건 폐지, 경력자 특별임용요건 추가(제9조~제10조, 제14조)
- “특별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 정비(제10조, 제13조 등 10개조문)
-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근거법령 변경(제11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에서 제16조로 변경
-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위원 확대(제12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언어장애인을 배려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제13조)
 - 의사발표를 의사표현으로 변경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조정(제13조의3제1항)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3%이내를 1%이내로 축소
- 고졸기능직 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과 관련 학과근거 마련(제14조제5항)
- 연구직 및 지도직의 전직요건 확대(제17조제1항)
 - 학력 제한 완화 차원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요건에 추가
 - ※ (현행) 학력 → (개정) 학력 또는 자격증

○ 특별승진임용기준 확대(제25조)

- 기존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삭제하고, 국정 및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등을 확대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46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직원리 산1-2번지,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산1번지 정상부에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 6. .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6. 11(월)부터 ~ 6. 30(월)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정선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

6.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예정 장소 : 2개소

설 치 장 소	CCTV설치 대수(대)	설치예정	비 고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2	1	6월 ~ 7월	정상부
정선군 임계면 문래리 산1	1	6월 ~ 7월	정상부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6. 30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전 화 : 033) 560-2424, Fax : 033) 560-2019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주 민 의 건 제 출 서

사 업 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2-474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사업중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항6의5)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92
- 문의전화 : 033-560-2220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의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 ① (생략) 1.~6의4. (생략) <u>6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u> 6의6.~8. (생략)	제1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6의4. (현행과 같음) <u><삭제></u> 6의6.~8.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

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공원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476호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조례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조례안 제2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지목변경
- 조정금의 산정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 함.(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 : 군수(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수 : 10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임 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자)
- 자 격 : 정선군의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간 사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둠

라. 위원의 해촉 및 기피 대상을 정함.(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 해 촉 : 심신장애자,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체척 대상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자
- 제 척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년 이내 안전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였던 자

마.위원장 및 간사 등의 직무를 정함.(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간 사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심의안전 및 회의록 작성·보존

바.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조례안 제9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심의안전,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사. 안전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10조)

- 의견제출 :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지적소관청 및 관련 전문가 - 회의참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서면제출
- 정책반영 : 제출의견 조사·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반영

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조례안 제11조)

- 지급대상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 지급방법 :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233-804)
- FAX : 033-560-2307
- 전 화 : 033-560-2260

붙임 :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477호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조례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조례안 제2조)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다. 위원회는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함.(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 : 판사(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
- 위원수 : 11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임 기 : 2년(공무원이 아닌 자)
- 자 격 :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정선군의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법학교수 및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지적측량기술자·감정평가사·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각 사업지구의 소유자,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 간 사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둠

라.위원의 해촉 및 기피 대상을 정함.(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 해 촉 : 심신장애자,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체척 대상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자
- 제 척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년 이내 안전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였던 자

마.위원장 및 간사 등의 직무를 정함.(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간 사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심의안전 및 회의록 작성·보존

바.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조례안 제9조)

-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전,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사.안전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10조)

-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위원회 참석 또는 서면제출
- 의견반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된 의견을 따름

아.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11조)

-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조례안 제12조)

- 지급대상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 지급방법 :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233-804)
- FAX : 033-560-2307
- 전 화 : 033-560-2260

붙임 :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경제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경제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 결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